

공

고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- 079호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9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

1.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,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53조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분할납부 가능(최대 9개월), 지로 사이트(www.giro.or.kr)이용시 카드결제 가능(수수료 1% 본인부담)

2.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 『국세징수법』 제81조에 따라 귀하(사)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.

3. 또한,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

-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%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
-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

나.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

-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

다.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, 결손처분자료 제공

라.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(監置)

-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

4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, 제76조

5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6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

(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, ☎ 062 - 457-1591)

붙임 : 대상자 명단 1부.

대상자 명단

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월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.)

(단위:원)

No.	과태료 고지번호	체납자	체납자 실명번호	과태료 금액	체납자 주소
1	0178190004530001858	박*	710110-*****	₩7,560,000	광주 북구 서암대로90번길15 205호